

4.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취지 기재례

가. 금전소비대차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0. . . 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또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〇〇. 〇. 〇.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1,000,000원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8. 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주장·입증책임의 분배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2014. 11. 21.자 소비대차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48,29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의 판결주문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기재 일부가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제출된 서증에 의한 사실인정의 가부
기재 일부가 변조된 것이라는 뜻으로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서증의 원고의 이름 아래 찍힌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을 원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서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변조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서증을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9422 판결)

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3. 12.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6,204,000원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179-1(○○로179길 1) 지상 시멘트부록조 함석층 단층 사무실 8.2㎡ 및 ○○시 ○○동 242 대 148㎡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4. 3. 12. 접수 제3166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 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12.21. 선고 92다47861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면책적 채무)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5. 30.자 30,000,000원, 같은 해 7. 30.자 10,000,000원, 같은 해 8. 30.자 100,000,000원, 같은 해 10. 30.자 300,000,000원의 각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각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참조판례] ① 면책적 채무인수의 법률효과 및 개인이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도 그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이므로,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이는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② 면책적 채무인수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 12376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카드이용대금)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국민카드회원 거래계약에 의한 국민비자카드(회원번호 : 4911-)와 국민마스타카드(회원번호 : 5414-)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용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보험금지급채무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자동차보험)

별지 기재의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망 권○○ 사이의 동 망인 소유인 10다1234호 승용차에 대한 2014. 7. 25.자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보험자의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의 범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보험요율의 체계 등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②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가 유상운송면책 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의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자동차보험)

2014. 5. 28. 11:00경 강원 ○○군 ○○면 ○○리 영동고속도로 신갈기점 137.5km 지점에서 2나1234 차량과 7아2354 차량과의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보험기간 내에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위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운행이익·운행지배를 상실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익은 상실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로 인하여 보험계약 자체가 당연히 정지 또는 실효된다고 볼 수는 없고, 특별약관에 의하여 담보하는 위험은 이미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로 간주되어 그 운행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를 받을 이익은 여전히 있으므로,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후 보험기간 내에 특별약관에 규정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4904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자동차보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10. 6.자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 지]

목 록

소외 박○○이 2014. 11. 5. 21:30경 피고 소유의 부산 29고15885호 베스타 소형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군(그 후, ○○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면 ○○리 마을 앞 차도폭 약 5m의 도로를 ○○읍 방면에서 ○○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 곳에 설치된 교량에서 운전부주의로 화물자동차를 우측 약 2m 높이의 배수로에 추락, 전복시킴으로써, 화물자동차에 승차하고 있던 소외 김○○, 이○○을 현장에서 사망케 함과 동시에 소외 김○○, 장○○, 김○○에게 중상을 입게 하였고, 박종석 자신도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에 관한 보험금 지급채무. 끝.

[참조판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손해의 범위(=보험금상당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미리 준비하여 간 보험청약서 양식에 직접 그 중요내용을 기재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그의 인장을 건네받아 보험계약자란에 날인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착오로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피보험자의 도장을 받지 않았고,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그 청약서를 건네받은 보험회사의 대리점 역시 이를 지적하여 보완하게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의 범위는 보험금 상당액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자동차보험)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체결된 피보험자동차 19다1236호, 보험기간 2012. 9. 8.부터 2013. 9. 8.까지, 피보험자 피고 최○○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피고들의 보험금청구에 따른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차량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을 얻어 기명피보험자를 매도인으로 하고 주운전자를 매수인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이 차량의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을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차량 매수인이 매도인의 승낙을 얻어 기명피보험자를 매도인으로 하고 주운전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관계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로 볼 수 없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을 뿐 아니라 당해 차량사고 이전에 그 소유명의까지 이전해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사고 당시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6110 판결)

[참조판례] ①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 및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자손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의 성질과 소멸시효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어느 것이나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보험사고가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통보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보험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한 사고에 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그 사고는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잘못된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고, 또 이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사고 발생시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 소멸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자동차보험)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의 2011. 7. 26. 자동차사고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제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
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부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52082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자동차보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 1]

1. 보험계약의 종류 : 상해보험계약
2. 증권번호 : PAT123456
3.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피고
4. 보험기간 : 2005. 12. 30. 16:00부터 2008. 12. 30. 16:00까지
5. 보험가입금액 : 사망, 후유장해시 최고 3억원, 의료실비 최고 700만원, 주당 입원비
1주당 35만원, 휴업손해금 1일당 3만원
6.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함. 끝.

[별지 2]

피고는 2007. 10. 19. 10:00경 ○○시 ○○동 ○○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2마
1234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 방향에서 ○○동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소외 김○○은 69다1234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방향으로 운전하다
가 앞서 가던 버스가 정차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해 피고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약 30m
전방에서 오고 있음을 확인하고 시속 약 10km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으나 버스
를 추월하지 못하고 피고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정면충돌하였다.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자동차보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1. 4.자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 지]

목 록

소외 망 서○○이 2014. 5. 14. 12:20경 서울 11구1447호 스쿠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43.5 km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서○○, 소외 윤○○, 인○○이 사망, 소외 경○○, 김○○이 부상, 배나무 3그루 및 과수원변 철조망과 위 스쿠프 승용차가 파손됨으로써 발생한 보험금 지급 채무 끝.

[참조판례] ①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②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자동차보험)

2010. 9. 13. 충남 78더1239호 봉고화물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보험계약 해지 후 피보험자가 여전히 자기 아닌 제3자가 보험금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그 제3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자 보험자가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후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

서, 피보험자가 자신에게는 보험금 청구권이 없지만 그 제3자에게는 보험금청구권이 있으므로 보험자는 그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있다고 다투는 것으로서, 보험자는 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피보험자가 그와 같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고 나옴으로써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게 될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과 위험이 현존하는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계약의 상대방이자 분쟁의 당사자인 피보험자를 상대로 그 계약이 효력이 없어 보험자에게 그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그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하여 피보험자에 의하여 야기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법률상 필요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1536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화재보험)

원고와 소외 권○○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19,432,668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의 동산 및 기계 등에 대하여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건물주를 위한 물건보험(화재보험)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공장을 경영하는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에 있는 동산 및 기계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명확한 언급이 없이 자신을 보험목적의 소유자로 기재하여 '사업장종합보험'을 체결하였고 그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상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입은 화재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와 같이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위의 보험계약 체결시 건물의 임차인인 사업자가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므로 보험청약서의 소유자란에 사업자의 성명을 그냥 기재하였을 뿐인 점, 한편 건물의 임차인인 사업자가 그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건물주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여 온 점, 이 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당해 건물에 발생한 손해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보험계약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보험계약자인 임차인이 그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인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화물손상사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2013. 6. 18. 발생한 화물손상사고에 관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보험금지급의무부존재확인등 청구(일반화재보험)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〇〇. 〇. 〇.자 일반화재보험계약에 기하여 같은 해 . . 화재발생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10,000,000원의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수개의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보험자가 계약 전체를 실효시키거나 취소하기 위한 요건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러 물건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집합된 물건 전체에 대하여 단일의 보험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건을 집단별로 나누어 따로이 보험금액을 정하거나 간에, 보험의 목적이 된 수개의 물건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만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으로 그 부분만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일부 물건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사항이 보험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 즉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불고지를 들어 계약 전체를 실효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법 제669조 소정의 초과보험계약에 관한 입증책임(=보험자)

상법 제669조 소정의 초과보험계약이라는 사유를 들어 사고 발생 당시의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 보험금지급의무의 제한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화재보험)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2007. 10. 8.자 및 2007. 11. 28.자 각 화재보험계약 {증권번호 10000 에이(A) 18700266 및 10000에이(A) 18700335}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화재보험의 목적인 공장건물에 대한 근로자들의 점거, 농성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보험증권의 배서에 의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에 위반되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고 본 사례

화재보험계약에서 따르기로 한 영국 화재보험위원회의 해외용 F.O.C(F) 약관 제8조(a)항의 취지가,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사정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여 보험자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보험료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그 제20조의 취지가 약관상의 모든 통지에 관하여 서면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폐업 신고에 항의하면서 위 화재보험의 목적인 공장건물을 상당기간 점거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농성하는 행위는 위 약관 제8조 (a)항에서 말하는 보험목적물 또는 이를 수용하는 건물에 대한 점유의 성질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에 영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 보험증권상의 배서방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2.7.10. 선고 92다13301, 13318 판결)

다. 손해배상채무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선박충돌사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선박충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상법 제773조 소정의 '선적항'의 의미 및 선박소유자인 건조업자가 발주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계선관리중인 미등록 선박의 선적항

상법 제773조 소정의 '선적항'은 선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등록항의 뜻 외에 해상기업의 본거항의 뜻도 갖는 것이므로 선박소유자인 건조업자가 발주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계선관리중인 미등록 선박은 계선관리하고 있는 항구를 본거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위 ① 항의 미등록 선박이 계선관리중에 좌초된 경우에 있어 선장이 체결한 구조계약의 효력을 계약체결대리권이 없다 하여 부인한 사례

위 ①항의 미등록 선박이 계선관리 중에 좌초된 경우에 있어 선장이 체결한 구조계약의 효력을 계약체결대리권이 없다 하여 부인한 사례.(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30880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화물침수사고)

1. 피고 소유의 선박 “코리언 ○○(KOREAN ○○)”호의 20○○. ○. ○.부터 같은 달 . . 사이 부산항에서의 화물침수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교통사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서울 8허4511호 차량에 의한 2009. 3. 29.자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손수운전 자동차 대여업자의 대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한다고 본 사례
손수운전 자동차 대여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라야 하고, 사용기간 등을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 대여전에 정비를 하여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제3자에게 운전을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특히 그 사용기간이 1일 밖에 되지 않는다면 대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인적관리와 대여차량에 대한 물적관리를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그 차량에 대하여 대여업자의 운행지배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8418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 ○. ○. 00:00 경 반포대교 약 00m 지점의 올림픽대로상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된 경우, 본소에 대한 소의 이익이 소멸되는지 여부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6.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공사도급계약 불이행)

원고와 피고간의 2009. 8. 21. 자 공사도급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일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판단의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시)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고,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1.15. 선고 92다36212 판결)

라. 약속어음금 등

☐ 약속어음금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2015. 2. 15.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234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 1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어음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의 방법

어음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어음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기존 어음에 개서하거나 새로운 어음을 발행, 교부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 채무승인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어있지 않다고 하여 채무승인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 21541 판결)

☐ 약속어음금채무부존재확인 청구(채무의 일부만이 부존재하는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가 2015. 2. 15.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234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채무 중 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 있어서 일부 패소판결의 당부

채무전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에 있어서 그 부존 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의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그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71.4.6. 선고 70다2940 판결)

[참조판례] ① 가분인 채무관계의 부존재확인 소에 있어서 일부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일부 패소판결의 가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또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전 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그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②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에 있어서 원고주장의 채무액을 넘는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청구일부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피담보채무중 잔존채무라고 주장하는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담보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이행을 구하는 청구중에는 잔존채무액이 원고 주장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확정된 잔존채 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청구의 일부를 배척하여 그 확정된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393 판결)

❖ 약속어음금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1 기재 공증된 약속어음에 기한 51,264,796원의 채무와 같은 목록 2 기재 공증된 약속어음에 기한 20,000,000원의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판례] ① 약속어음 발행인이 제3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어음발행행위를 한 사안에서, 어음행위에 민법 제110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취소를 인정한 사례

상호신용금고가 어음할인거래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할인대상 어음과 별도로 담보 목적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고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할인대상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는데, 그 할인대상 어음이 위조된 것이었으나 연대보증인이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고 연대보증 및 담보 목적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호신용금고로서는 위조어음을 할인할 당시 그 어음이 위조되었다는 것과 나아가 연대보증인이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어음할인거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여 약속어음을 상호신용금고에게 발행·교부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연대보증인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을 근거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장 부분이 상호신용금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② 약속어음 발행인이 제3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어음발행행위를 한 경우, 그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①항의 경우, 상호신용금고는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기망을 당한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은 자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6861 판결)

㊦ 가계수표금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가계수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마. 연대보증금채무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5. 10.자 주채무자 소의 ○○화학주식회사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860,000,000원의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보증 당시에 대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해 오던 이사가 사임한 경우, 계속적보증계약의 해지권을 부인한 사례

단순한 고용직 이사가 아니라 회사의 대주주로서 이사로 취임한 이래 부사장 등의 직책을 맡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해 오던 자가 회사 경영진 내부의 마찰이 있는데다가 다른 회사 경영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다시 감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면서 주주의 지위는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가 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회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사회통념상 그가 이사재직시 회사를 위하여 체결한 포괄근보증계약을 유지케 함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가 보증인이 된 것이 오로지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사의 지위에서 사임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5.4.25. 선고 94다37073 판결)

[참조판례] ①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의 보증채무는 통상적으로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된 때에 이와 함께 확정되는 것이지만, 채권자와 주채무자와 사이에서는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 사이에서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보증계약 종료시에 보증채무가 확정되므로 보증인은 그 당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나, 그 후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계약 종료 후의 채무이므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사이에서는 변제이익

의 점에서 차이가 없고, 따라서 주채무자가 변제한 금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법정변제충당하여야 한다.

③ 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한 소비대차약정상의 약관 조항의 효력(무효)

주채무의 거래기간이 연장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한 은행과의 소비대차약정상의 약관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예비적병합, 계약무효)

(주위적 청구취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대리인이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본인의 인감증명과 납세증명원, 본인의 인감도장을 보증보험회사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대리인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구입할 때에도 본인을 대리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과 납세증명원, 본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였으므로 담당직원이 위 거래를 통하여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를 알게 되어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회사를 대리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직원이 연대보증인 본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업무지침이나 실무관행이 없어 회사가 전문금융기관이라는 것만으로 회사의 직원이 본인에게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연대보증약정서에 기재된 연대보증인의 전화번호는 차후 연락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연대보증인 본인의 전화번호만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면, 회사의 직원으로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 사례.

② 대리인에 의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본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본인에게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리인에 의하여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다면 모든 대리행위에 있어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대리행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우려가 있어 본인의 자필서명이 그 보증보험계약의 유효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반드시 본인에게 전화 등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1976. 4. 13.자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주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74. 3. 25 접수 제6351호로 경료한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 지]

제1목 록

주 채무의 표시

피고 은행으로부터 1973. 9. 3.부터 1974. 2. 26. 사이에 각 대여 받은 각 금원 중,

- | | | |
|------------|-------------|------|
| 1. 소외 김○○의 | 2,500,000원의 | 반환채무 |
| 2. 소외 김○○의 | 3,500,000원 | " |
| 3. 소외 유○○의 | 5,048,000원 | " |
| 4. 소외 성○○의 | 3,000,000원 | " |
| 5. 소외 이○○의 | 3,250,000원 | " |

[참조판례]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대리인이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본인의 인감증명과 납세증명원, 본인의 인감도장을 보증보험회사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대리인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구입할 때에도 본인을 대리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과 납세증명원, 본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였으므로 담당직원이 위 거래를 통하여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를 알게 되어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회사를 대리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직원이 연대보증인 본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업무지침이나 실무관행이 없어 회사가 전문금융기관이라는 것만으로 회사의 직원이 본인에게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연대보증약정서에 기재된 연대보증인의 전화번호는 차후 연락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연대보증인 본인의 전화번호만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면, 회사의 직원으로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 사례.

② 대리인에 의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본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본인에게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리인에 의하여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다면 모든 대리행위에 있어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대리행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우려가 있어 본인의 자필서명이 그 보증보험계약의 유효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반드시 본인에게 전화 등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2. 4. 19.자 95,565,003원 및 2002. 4. 23.자 48,081,776원
합계금 143,646,779원(주채무자 ○○실업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각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보증채무와 주채무, 연대채무와 단순채무 사이에 각각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5543 판결)

㉕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윤○회와 피고 사이의 2007. 5. 19.자 20,000,000원의 소비대차약정에 기한 윤○회
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경우,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지 여부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②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정변제충당은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원본 상호간에는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도래 시기, 그리고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나, 다만 그 이행기나 변제이익의 다과에 있어 아무런 차등이 없을 경우에는 각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 되는 것이다.

③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착오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한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이 면책되는지 여부 및 위의 경우, 연대보증인이 부담할 채무액의 계산방법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착오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였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한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담보 상실, 감소에 관한 민법 제485조를 유추하여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면책하게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할 채무액은,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였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각 채권에 충당한 다음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한 채권 중 회수되지 못한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51339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원고가 2015. 1. 3. 주식회사 ○○주택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에 터 잡은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① 연대보증계약과 같은 일방적 채무부담 행위가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연대보증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② 산업합리화업체로 지정된 회사 및 그 대표이사가 도산위기에 처한 가운데 단지 대표이사의 처라는 이유만으로 부담할 능력 밖에 있는 거액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약 11년간 계속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매년 갱신하여 온 경우, 그 연대보증계약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서울지법 1999. 11. 12. 선고 98가합102307 판결 : 항소)

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광업권에 대한 피담보채무 및 대여금 채무)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 기재 광업권에 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피담보채무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소비대차계약상의 대여금 채무는 2012. 3. 19. 현재 11,748,547원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별지 채무 목록 기재의 각 채무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5. 22. 접수 제31561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 지]

채 무 목 록

1. 금 26,000,000원(2012. 8. 1.자 발행 약속어음금 45,000,000원 중 일부금)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2013. 1. 28.까지는 연 21%, 그다음 날부터 같은 해 3. 28.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무
2. 금 20,000,000원(2012. 8. 1.자 발행 약속어음금 23,000,000원 중 일부금)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30.부터 2013. 1. 28.까지는 연 21%, 그다음 날부터 같은 해 3. 28.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무
3. 금 60,000,000원(2012. 8. 2.자 발행 약속어음금 60,500,000원 중 일부금)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부터 2013. 1. 28.까지는 연 21%, 그다음 날부터 같은 해 3. 28.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무
4. 금 20,000,000원(2012. 8. 12.자 발행 약속어음금 21,203,193원 중 일부금)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2013. 1. 28.까지는 연 21%, 그다음 날부터 같은 해 3. 28.까지는 연 1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무. 끝.

부 동 산 목 록

1. 서울 ○○구 ○○동 394-110 대 164㎡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4-11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123길 4
연와조 세멘와즙 2층 주택
22.97㎡
지하실 2.2.8㎡. 끝.

[참조판례] 은행과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채무자가 채권자인 은행

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말미암거나 여신거래에 대한 모든 채무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가 제3자에게 물품대금조로 발행·교부한 어음이 어음할인을 위하여 은행에게 배서양도되어 은행이 이를 취득하게 되었다면, 그 어음금채무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저당권설정계약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채무자가 채권자인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중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 비용, 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대한 모든 채무'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속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채무자와 채권자인 은행 사이에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은행이 어음을 채무자와의 여신거래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물품대금조로 소외 회사에게 발행, 교부한 것을 그 소외 회사가 어음할인을 위하여 은행에게 배서, 양도함으로써 은행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라면, 그 어음금채무는 채무자와 은행과의 사이의 여신거래로 발생한 채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어음금채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23463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등 청구(연대보증채무, 근저당채무 등)

1. 피고에 대하여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경료된 같은 목록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원고 박○○의 근저당채무(등기된 채권최고액 금 00원) 중 채권최고액 금 00원을 초과하는 금 00원의 근저당채무나 같은 목록기재 보증서에 의한 연대보증채무 기타 그 외의 채무는 일체 존재하지 아니함을,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경료된 같은 목록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원고 남○○의 근저당채무(등기된 채권최고액 금 00원) 중 채권최고액 금 00원을 초과하는 금 00원의 근저당채무나 같은 목록기재 보증서에 의한 연대보증채무 기타 그 외의 채무는 일체 존재하지 아니함을,

다. 별지 제3, 4목록 기재 부동산에 경료된 같은 목록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원고 주○○, 정○○의 근저당채무(등기된 채권최고액 금 00원) 중 채권최고액 금 00원을 초과하는 금 00원의 근저당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근저당권설정등기목록과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피고와 소의 윤○○ 사이의 2014. 4. 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경남 ○○군 ○○면 ○○리 123 답 100㎡, 같은 리 134 답 10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지방법원 ○○등기소 같은 달 10. 접수 제45100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1,00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근저당권의 소멸 후 제기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이에 의하여 위 부동산이 경락확정되었으며 또 위 금원으로 근저당권자가 이미 변제충당까지한 경우 위 근저당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즉시 확정 이익이 없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서울고법 1977.3.22. 선고 76나453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

1. 원고(선정당사자)와 소의 백○택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5. 10. 23.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5. 10. 23. 접수 제10423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피담보채무의 소멸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상대방(=양수인)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며,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으며, 근저당권의 이전이 전부명령 확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부존재 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피담보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확인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공2000상, 1188)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근저당권부채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와 2016. 5. 22. 접수 제27112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950,000,000원, 채무자 소외 조○길, 근저당권자 피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에 기한 소외 조○길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①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산으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해석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산으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도 이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대출받은 금원 및 그 부수 채무만 포함되고 채무자의 기존연대보증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2332 판결)

사. 구상금채무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구상금채무)

-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굴삭기 할부판매보증보험금의 구상금청구사건에 관한 ○○지방법원 2009. 9. 21. 선고 2008가합3333호 판결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의 효력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연대보증인 1인에 대한 채권포기는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조건부 이자채권포기약정으로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 있거나 합리적 의사해석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나머지 원금을 약정기한까지 변제하는 경우 이자채권을 포기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당사자 사이의 이자채권포기약정은 잔여원금을 약정기한까지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4.11.8. 선고 94다37202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등 청구(구상금채무, 금전지급)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10.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①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거래불량자등록대상자로 되어 있는 주채무자의 의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신용거래불량자 등록대상자로 되어 있는 '1,500만 원 미만의 대위변제금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채무자'라 함은 자신에게 신용을 부여한 금융기관의 기대를 저버린 채 변제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직접 금융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그 금융거래로 인한 효과가 귀속됨에 불과한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보증보험사가 표현대리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한 자를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표현대리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한 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도, 보증보험사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하여 그로 하여금 은행대출 등 경제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받게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보증보험사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7511 판결)

아. 기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계약이행보증보험 채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145,232,400원의 보증보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 지]

계약이행 보증보험 내역

증권번호 제 인기 147700985호
 보험계약자 ○○산업 주식회사
 피보험자 ○○개발 건설사무소
 보험금액 184,190,000원
 보험료 2,823,632원
 보험기간 1977. 9. 24.부터 79. 5. 16.까지
 계약명 ○○지구 개발사업 1공구 B 부분공사
 이행기일 1977. 9. 24.부터 1979. 3. 17.
 계약금액 1,841,900,000원
 보험자 원 고
 보험계약일자 1977. 9. 24.

[참조판례]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금지급관계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 형식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 등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보험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5.8. 선고 89다카25912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자연손해금 채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47,501,322원에 대한 2009. 3. 1.부터 2011. 6. 11.까지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27,101,790원의 자연손해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기성회비지급채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성회비내역 기재 원고들 해당 각 금원의 기성회비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사립대학교 재학생에게 학교법인에 대한 기성회비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수원지법 성남지원 1999. 12. 15. 선고 99가합2733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공사 이행보증채무)

소외 주식회사 ○○훼미리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공사 이행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약정이 있을 때 그 계약보증금의 성질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별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별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

②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그로 인하여 하도급인이 입은 손해 중 계약보증금 범위 내의 손해는 계약보증금의 물취로써 그 배상에 갈음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그에 대하여 하수급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되, 다만 하수급인이 배상할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손해담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하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보증금을 위약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아파트분양계약관련 납부중도금)

원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주택과 별지 납부중도금 일람표 '계약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체결한 수원 ○○지구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같은 일람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공제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를 낸 후 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되기 전까지 납부된 중도금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공제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합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재개를 위한 자구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사회통념상 당해 주택 건축공사를 완공할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경우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를 낸 이후 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기 전까지 납부된 중도금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66003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계약위반에 인한 용역대금반환채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 29. 체결한 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관리 용역계약(2차)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490,000,000원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는 624,122,614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계약이 통상 도급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수급인이 그 일을 완성하면 미리 확정된 용역의 대가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계약이 성질상 반드시 정액급의 보수 지급방식을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계약의 구체적 인 약정에 따라 얼마든지 보수지급의 방식을 달리하여 실제로 투입한 인력의 실적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므로 먼저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주장·입증책임의 분배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공1998상, 1023)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신용장에 의한 대지급금의 지급채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소외 권○량의 신청에 따라 동인에게 발급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신용장에 의한 대지급금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미국 소재 법인의 대리인이 대한민국 은행의 외국 지점과 신용장개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행위의 성립, 효력 및 추인 여부에 관한 준거법
섭외사법상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별다른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 미국 소재 법인을 대리하여 신용장개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그 법인이 사후에 대리인이 대리권한 없이 체결한 신용장개설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그 신용장개설 계약체결지의 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2198 판결, 공1996상, 203)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신용카드회원계약에 의한 카드이용대금)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년경 갱신된 신용카드회원계약에 의한 카드이용대금 및 이에 부수된 일체의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3.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연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회원을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하여 각종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그 회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신용카드 회사는 그 회원에게 신용훼손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수원지법 2000. 4. 7. 선고 99가합25801 판결 : 확정)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보험금채무)

김철수(690120-1234567)의 2014. 1. 30. 사망과 관련하여, 증권번호 12345678, 계약자 김철수, 피보험자 김철수로 된 무배당 대한중신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재해사망 보험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